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알림

1. 철도안전법 일부개정('16.1.19.)과 관련입니다.
2.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령, 기술기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, 각 소속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이해 및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개정내용의 전파 추진
    - 소속별 자체교육 실시
    - 현장 전파교육 추진(해당 직렬 전파교육)
  - 나.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
    - 공사사규 또는 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등 변경 필요시 안전방재처 사전협의 후 진행
      - ※ 법의 시행 기준일('17.1.20.) 3개월 이전
    -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 및 안내판 설치 등

- 붙임 : 1. 철도안전법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1부.  
 2. 철도안전법('16.1.19. 일부개정) 1부.  
 3. 철도안전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안 전 방 재 처 **최환영**

수신자 운전계획처장, 차량계획처장, 통신처장

과장 **박정수**

처장 03/24  
**최환영**

협조자 부장 **양민수**

시행 안전방재처-1403 (2016.03.24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)6311-2125 전송 02)6311-4289 / 5678love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